

	<h2 style="margin: 0;">특임교수 임용 규정</h2>	규정 번호	2-4-35
		제정 일자	2021.12.23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.) 특임교수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특임교수라 함은 국가·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본 대학의 교육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특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와 같다.

1. 국내·외에서 연구실적과 산업체 현장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
2. 특정분야의 권위자로서 업적이 탁월하며, 본 대학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
3. 기타 본 대학 발전 또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<2024.2.28. 제정>

제4조(임용절차) 특임교수는 해당 학과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장 및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평가 등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.

제6조(구비서류) 특임교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1. 특임교수 추천서 1부.
2. 이력서 1부.
3. 학력증명서 1부.
4.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(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1부.
5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7조(강사료·연구비·보수) 특임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2. 특임교수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규정에 따른다. <2024.2.28. 개정>
3.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특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2024.2.28. 제정>

제8조(직무)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의 또는 연구
2. 특별강연, 세미나
3. 기타 본 대학의 교육 대학발전을 위해 총장이 부여한 특별한 임무 <2024.2.28. 개정>

제9조(면직) 특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
2. 특임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3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4.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3조(자격), 제7조(강사료·연구비·보수), 제8조(직무)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